

장부 조제 및 인증 신청서

신청인	명 칭		대 표	
	주 소	지번 주소	담 당 자	
		도로명 주소	우편번호	
	전화번호		신청회차	20 년도 회차

위 신청인(임명공증인, 인가공증인)은 재정규칙 제13조의4 제4항에 따라 증서원부, 인증부, 확정일자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제 및 인증 등을 신청하면서 각 실적회비를 납부합니다.

장 부	신청 일련번호	장부 신청 권수	1권당 실적회비	금 액
증서원부	~	권	(총회에서 결정된 실적회비)	원
인증부	~	권	(총회에서 결정된 실적회비)	원
확정일자부	~	권	(총회에서 결정된 실적회비)	원
실적회비 총액				원

* 주의 : 증서원부, 인증부, 확정일자부의 1권 기준은 장수 25매, 연번 100번 단위입니다. 따라서 권수 표기는 신청 일련번호를 개별 건수로 환산하고 100으로 나누어 기재한 후 실적회비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
 [예, 신청 일련번호가 1001번~1500번일 경우 개별 건수는 500건이며, 신청 장부 권수는 개별 건수를 100으로 나누는 5권이 되므로, 실제 납부할 실적회비는 '1권당 실적회비' x '5권'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]

20

신청인

(인)

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귀하

접수일자		접수번호		인증일자	
발송일자		담당자 확인		등기(택배)번호	

계좌 번호 : 신한은행 100-013-880293 예금주 대한공증인협회

접수 : 팩스 02-3476-5551 대한공증인협회 사무국